제 10 장 졸업 및 국가고시위원회

개정 2012년 11월 27일

제29조 (설치와 구성) 의과대학은 졸업성적사정 및 의사국가시험의 준비와 관리를 위하여 졸업 및 국가고시위원회를 둔다.

1.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한다.
2.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학장, 의학과장 및 의학과 4학년 담임교수가 된다.
3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0조 (기능) 졸업 및 국가고시위원회는 의사국가시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사국가시험 대비 학습 지원
2. 의학과 4학년 성적관리
3. 의사국가시험 탈락 졸업생의 학습 지원
4. 기타 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